

# **평창군의회 의원의 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7
------------------	-----

제출년월일 : 2005. 8. 30.

제출자 : 고응종 의원외 2인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91호)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을 조정하고, 제명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제명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 지방의회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지급 범위가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당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

##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관계법령 : 『별첨 2』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수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u>7만원</u> 으로 한다.	제3조(회기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10만원</u> -----.

# 關係法令 拔萃

## 지방자치법

第58條 (議案의 發議) ①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分의 1 이상 또는 議員 10人 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

- ② 생략
- ③ 생략

第123條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制定등) 地方議會가 새로운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나 案件을 議決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 ② 생략
- ③ 생략

[별표 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 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범위
시 · 도 의 회 의 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 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100,000원 이내	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 이내)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창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4조(예고의 예외) 입법예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정비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인 경우
4.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